

과 업 내 용 서

【강남구 주차 수급실태 및 관련계획 수립 용역】

2016. 2.

**강 남 구
(교 통 정 책 과)**

제 1 장 총 칙

제 1 절 과업의 명칭

1. 과업의 명칭 : 2016 주차실태조사 및 주차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발주기관 및 계약대상자

1) 발 주 기 관 : 강남구(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2) 계약 대상자 : 연구용역 수행자(용역사)

제 2 절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은 강남구의 주차실태조사(주차시설현황조사와 주차이용실태조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강남구 중장기 주차정책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제 3 절 과업의 개요

1. 과업범위 : 강남구 전지역(62개 블록)

2. 과업내용

1) 주차실태조사 : 주차시설현황조사와 주차이용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시행

2) 조사자료입력 : 조사 즉시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전산입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입력

3) 주차실태조사에 따른 우선 대상지역 선정

4) 주차정책 수립 : 외지차량 진입에 따른 주차수요 변화 및 주차장 회전율을 감안한 지역별 주차수급분석 결과에 따라 개선 대안을 도출 하고 불법 주차 상습지역 현황 및 원인 파악을 통해 근절 대책을 구체적 명시 → 소요예산 등 중장기 주차정책 수립

※주차실태조사 세부 시행내용은 “서울시 주차실태조사 지침서(2006.11)”에 의한다.

3. 과업기간

- 1) 착수일로부터 300일(10개월)
- 2) 과업의 추진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조사일정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 1)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정책과
-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 3) 연 락 처 : 02)3423-6405

5. 용역선정방법 : 일반공개경쟁

6. 발주기관 제공자료

- 1) 현장조사용 도면 : 과업범위 내 현장조사용 도면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 2) 조사자료 입력 프로그램 : 서울시에서 제공한 “주차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
- 3) 기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 2 장 과업의 주요내용

제 1 절 사업계획 수립

- 1) 본 사업의 목적은 서울 주차시설 및 주차이용실태에 대한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고 시정에 반영하는데 있으므로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세부조사지침(“서울시 주차실태조사 지침서” 참조)을 토대로 조사원 채용, 실사관리, 사후검증, 자료입력 및 분석 등 조사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총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본 과업의 조사일정은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과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정하는 조사일정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기간내에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주차실태조사 조사일정

- ① 조사설계 및 조사준비 : 2011.4월
- ② 조사원 및 조사관계자 집합교육 : 2011. 5월(2회)
- ③ 조사시행 및 조사자료 전산입력 : 2011.6월~11월
- ④ 조사자료분석 및 중장기 주차정책 제안(도면작성) : 2011.9월~10월(예정)

제 2 절 주차실태조사 시행

1. 조사구역 설정

- 1) 조사구역은 강남구에서 2011년 시행한 주차실태조사구역 62개 블록을 활용하며, 블록의 명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2. 조사내용 : 주차시설현황조사와 주차이용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3. 조사대상

- 1) 주차시설현황조사 : 주차장법 규정에 따른 주차시설(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주차 가용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2) 주차이용실태조사 :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모든 차량(적법/불법 포함)을 조사한다.

4. 조사항목

1) 주차시설현황조사

- 주차시설별 주차장 형태, 소재지, 운영·관리 주체, 용도, 운영시간, 주차요금, 주차규모, 시간대별 주차장 이용률 등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한다.
- 단, 시간대별 주차장 이용률 조사는 일반건축물로 한정하며, 주택용도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주차이용실태조사

- 주차위치, 적법/불법 주차여부 등 주차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3) 간선 및 이면도로 상습 불법주차구역 조사 : 동별 3~4개 지역(구간) 도출

4) 불법주차 원인 및 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

5. 조사시간대

1) 주차시설현황조사

- 주간시간대에 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조사일정에 맞게 조사자가 편한 시간대에도 조사가 가능하다.

2) 주차이용실태조사

- 지역별(주택가, 도심지)로 주차행태가 상이하여 주차문제 유형이 다양하므로 지역별 주차 특성을 고려한 적정 주차정책 수립을 위해 첨두시간을 고려해서 조사를 시행한다.
- 주간시간대(오후 12:00 ~ 17:00)와 야간시간대(오후 20:00 ~ 24:00)로 구분하여 2회 조사를 시행한다.
- 단, 주차시설현황조사와 주차이용실태조사는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날짜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 조사방법

1) 주차시설현황조사

① 노상주차장

- 조사원은 해당 구에서 제공받은 주차시설에 대한 현장도면을 참고로 해당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행하며 실사조사 후 조사표에 기재한다.

② 노외주차장

- 조사원은 해당 구에서 제공받은 주차시설에 대한 현장도면을 참고로 해당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행하며 실사조사 후 조사표에 기재한다.
- 단, 시간대별 주차차량 비율 조사항목은 주차면수가 10면 이상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

③ 건축물 부설주차장(일반조사대상)

- 조사원은 해당 구에서 제공받은 주차시설에 대한 현장도면을 참고로 해당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행하며 실사조사 후 조사표에 기재한다.
- 또한 부설주차장 관리카드가 누락된 주차장의 경우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 단, 시간대별 주차차량 비율 조사항목은 주차면수가 10면 이상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
- 지원주차장의 경우 조사원은 해당 구에서 제공받은 지원주차장 설치 List를 참고로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④ 건축물 부설주차장(특별조사대상)

- 특별조사대상 판단 기준은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대상을 기준으로하되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작성된 특별조사대상 리스트에 대해서는 예비조사표를 포함한 조사협조공문을 미리 발송하고, 공문발송 후 해당 건축주에게 전화로 조사협조 및 방문예정일 확인 후 조사원이 현장방문 미리 작성된 조사서의 조사항목 누락여부 등을 확인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2) 주차이용실태조사

- 조사원은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현장도면을 참고로 도로상 불법주차 및 적법 주차를 확인하고 지도상에 적법 및 불법 주차차량 위치를 직접 표기한다.

7. 조사양식 : 별첨 참조

제 3 절 주차실태 조사자료 전산입력 및 결과분석

1. 조사자료 입력

- 1) 조사결과는 철저한 내용 검토 후 입력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조사 즉시 GIS 기반 입력프로그램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단 조사자료 입력프로그램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다.
- 3) 조사입력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조사된 자료를 검증하고 입력하는 인력 1인을 요역 발주부서에 상주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2. 조사자료 결과분석

- 1) 조사자료 결과분석은 발주기관에서 결과분석 보고서에 대한 기본 양식을 마련 후 양식에 맞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종합분석을 실시한다.
- 2) 또한 주차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분석과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결과에 대해 종합분석을 실시한다.

제 4 절 주차실태 조사자료 검수

- 1)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의 경우 총 조사대상의 5~10%에 대해 철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조사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한다.
- 2) 검증결과는 용역책임자가 최종 확인 검토하여야 하며, 검증 과정에서 실제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해당 조사원이 실시한 조사지점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단, 검수 대상은 주차시설현황조사에 한한다.

제 5 절 주차관련 계획 수립

1) 주차수급분석 및 향후 주차 계획 수립

- 조사구역별 주차특성 및 연차별 주차 공급 방안 분석
- 주차장법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수립

2) 주차실태조사에 따른 우선 대상지역 선정

- 주차장설치 우선지역 순위 선정 : 각 동별 및 대상지별 우선 순위 결정
 - 주차장확보율, 불법주차 및 주정차 단속건수 등 활용한 자료 분석
 - 주차장개발 순위 결정위원회(가칭) 구성 : 주민, 교통전문가 등
- 대상지 : 관내 52개 근린공원, 공공용지 및 나대지 등 검토
 - 공공용지가 여의치 않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부지매입 검토
-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이전(안) 구상
 - 장기계획인 『아셈로 지하주차장』 및 『위례~신사 경전철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구상
 - 단기(안)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차시설 확충 방안 검토

4) 국내외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 사례 도입

- 협소한 부지를 활용한 외국의 주차사례 및 설비 검토
- 공원지하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및 성공 사례 : 국내 및 일본 등
- 주차설비 및 우수 공원사례 강남구 적용 방안 검토

5) 주차장 설계 등 중기 기본계획 수립(5~10년 단위 계획 수립)

- 대상지 : 약 20~30개 예상(각 동별 1~2개소)
-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기본설계 및 건축계획 수립(평면식 및 입체식 가능한 설계 도출)
 - 일본, 싱가포르 등 소규모 부지를 활용한 주차방식 벤치 마킹 및 도입
 - 공원주차장 개발에 따른 공원심의 등 도시계획 이행 도서 작성
 - 공사비 산정 및 경제성(B/C, NPV 등) 분석 등

제 3 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제 1 절 일반사항

- 1) 본 조사 시행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조사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
- 2) 조사 시 누락되는 대상이 없도록 조사 도면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용역수행기관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현장조사원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의견 조율을 실시하고, 문제점 발생 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 4)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서울시의 관계규정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5)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때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6)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연구진의 구성, 자문위원 위촉을 하고자 할 때와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7)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8) 과업수행 착수보고 시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9)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10) 본 과업 수행 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발주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 11)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제 2 절 기타사항

-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원과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3) 조사결과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조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4) 본 조사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조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5) 본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6) 상기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이 진다.

제 3 절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개최

1) 착수보고

- 시 기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내 용 : 용역시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 등
- 방 법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2) 중간보고

- 시 기 :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중간보고를 지시할 수 있음
- 내 용 : 과업 진행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 방 법 : 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하여 결정 가능함

3) 최종보고

- 시 기 : 계약 만료일 10일전까지 제출
- 내 용 : 과업결과 종합보고
- 방 법 : 일정 및 보고방법 협의하여 결정

2. 성과품의 납품

1) 규 격 : 별도 지정

2) 수 량

- ① 착 수 보 고 서 : 10부
- ② 최 종 보 고 서 : 30부

3) 최종 성과품

- ① 조사 완료된 조사표 및 조사구역 지도
- ② 요약보고서(분석결과 포함 및 기본 구상 도서 포함) 30부
- ③ 최종보고서 : 아래내용 포함 30부
 - 기본 건축계획 도서(CAD로 작성, A3 좌철)
 - 공사비 내역서(엑셀로 작성, A4 상철)
 - 공원조성계획 심의 내역서 (PPT 및 캐드로 작성, 서울시 공원지침 양식)
 - 서울시 투자심사 내역서(아래한글 작성, 서울시 투자심사 매뉴얼에 따라 작성)
- ④ 최종성과품의 내용을 수록한 별도 저장 매체(CD, USB 등)
- ⑤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4) 모든 성과품의 편집·제작·인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조 사 양 식

1. 주차시설현황 조사표

가) 노상주차장

조사원 유의사항	
▶ 조사원은 아래의 조사항목 중 [보기]에서 적합한 번호를 골라 조사표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원은 조사항목 중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상주차장 조사표

조사항목		보 기	
① 소재지/도로명(주차장명)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구/ 동/ 도로명 기재(도로연장이 길 경우 한 블록단위씩 임의 구분)	
② 주차면수		도로축별 주차면수 기재	
③ 주차장 용도		① 시간제 ② 거주자 ③ 시간제+거주자	
④ 주차요금	거주자	거주자	주 간 ()원 야 간 ()원 전 일 ()원
		업무자	주 간 ()원 야 간 ()원 전 일 ()원
	시간제	최초30분 ()원 매10분 ()원 전 일 ()원	

조사항목		보 기(※주차장 용도가 시간제인 경우만 조사)	
⑤ 관리주체		① 시영 ② 구영	
⑥ 운영주체		① 구직영 ② 공단위탁 ③ 민간위탁	
⑦ 부제시행여부		① 미시행 ② 10부제 ③ 5부제 ④ 승용차 요일제 수 10부제+요일제 ⑥ 5부제+요일제	
⑧ 운영시간	평 일	□□시:□□분 - □□시:□□분	
	토요일	□□시:□□분 - □□시:□□분	
	공휴일	□□시:□□분 - □□시:□□분	
⑨ 주차차량 이 용 율	오전 10시	주차 차량 비율(※ 시간제 주차장 중 주차면수 10대 이상만 대상)	
	오후 15시	주차 차량 비율(※ 시간제 주차장 중 주차면수 10대 이상만 대상)	
	오후 19시	주차 차량 비율(※ 시간제 주차장 중 주차면수 10대 이상만 대상)	

■ 노상주차장 응답표(작성예)

연번	① 소재지 (주차장명)	② 주차 면수	③ 주차장 용 도	④ 주차요금		⑤ 운영 주체	⑥ 관리 주체	⑦ 부제 시행 여부	⑧ 운영시간			⑨ 주차차량 이용률		
				거주자	시간제				평일	토요일	공휴일	오전 10시	오후 15시	오후 19시
1	노원구 공릉동 노원길 3 ~ 노원길 15	21	3	주간 : 3천 야간 : 2천 전일 : 4천	10분에 1,000원	2	2	1	09~19	전일	전일	50%	90%	60%

나) 노외주차장

조사원 유의사항

- ▶ 조사원은 아래의 조사항목 중 [보기]에서 적합한 번호를 골라 조사표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조사원은 조사항목 중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외주차장 조사표

조사항목		보 기	
① 소재지	노외주차장의 소재지를 구/ 동/ 번지 로 기재	새 부여 주소 기재	
② 주차장명	주차장명 기재		
③ 주차면수	법정주차면수 기재		
④ 주차시설형태	① 자주식	② 기계식	③ 자주+기계식
⑤ 관리주체	① 시영	② 구영	
⑥ 운영주체	① 구직영	② 공단위탁	③ 민간위탁
⑦ 주차장 용도	① 시간제	② 거주자	
⑧ 부제시행여부	① 미시행	② 10부제	③ 5부제
	수 10부제+요일제	⑥ 5부제+요일제	④ 승용차 요일제
⑨ 운영시간	평 일	□□시:□□분 - □□시:□□분	
	토요일	□□시:□□분 - □□시:□□분	
	공휴일	□□시:□□분 - □□시:□□분	
⑩ 주차요금	거주자	주 간 ()원 야 간 ()원 전 일 ()원	
	시간제	최초30분 ()원 매10분 ()원 전 일 ()원	
⑪ 주차차량 이 용 율	오전 10시	주차 차량 비율(※ 주차면수 10대 이상만 대상)	
	오후 15시	주차 차량 비율(※ 주차면수 10대 이상만 대상)	
	오후 19시	주차 차량 비율(※ 주차면수 10대 이상만 대상)	

■ 노상주차장 응답표(작성예)

연 번	① 소재지		② 주차장 명	③ 주차 면수	④ 주차 형태	⑤ 관리 주체	⑥ 운영 주체	⑦ 주차장 용 도	⑧ 부제 시행 여부	⑨ 운영시간			⑩ 주차요금		⑪ 주차차량 이용률		
	구주소	신주소								평일	토요일	공휴일	거주자	시간제	오전 10시	오후 15시	오후 19시
1	서초구 방배동 445-3	서초구 남부순환로 2109	혜성 II	38	1	3	3	1	1	10~2 2	10~16	전일	×	기본10분 500원 대 10분 500원	80%	110%	90%

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일반조사대상)

조사원 유의사항

- ▶ 조사원은 아래의 조사항목 중 [보기]에서 적합한 번호를 골라 조사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조사원은 조사항목 중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반조사대상) 조사표

조사항목		보 기	
① 소재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구/ 동/ 번지 로 기재	새 부여 주소 기재
② 건물명		건물명 기재	
③ 지원주차장 여부		① 일반주차장	② 지원주차장
③-1 지원유형(③에 ②의 경우만)		① 내집주차장	② Green Parking
④ 주차면수		총 주차면수 = 법정주차면수 + 지원주차면수 (법정주차면수 = 일반인 + 장애인 주차면수를 구분하여 기재) 가용주차면수, 총세대수(공동주택의 경우만)	
⑤ 주차시설형태		① 옥내 자주식	② 옥내 기계식
		③ 옥외 자주식	④ 옥외 기계식
⑥ 시설물 용도1)	주 용 도	① 일반주택	② 공동주택
	부속용도	① 일반주택	② 공동주택
		③ 일반건축물	③ 일반건축물

조사항목		보 기(*총 주차면수가 10대 이상인 일반건축물만 조사)	
⑦ 주차장 개방 대상		① 입주자개방	② 방문객개방
		③ 모두개방	
⑧ 부제시행여부		① 미시행	② 10부제
		③ 5부제	④ 승용차 요일제
		수 10부제 + 요일제	⑤ 5부제 + 요일제
		⑥ 5부제 + 요일제	⑦ 직원만 10부제
⑨ 운영시간	평 일	□□시:□□분 - □□시:□□분	
	토요일	□□시:□□분 - □□시:□□분	
	공휴일	□□시:□□분 - □□시:□□분	
⑩ 주차요금 부과대상		① 입주자	② 방문객
		③ 입주자 + 방문객	
⑪ 주차요금		요금 부과대상별 주차요금 기재 (매월/ 시간당)	
⑫ 주차차량 이 용 율	오전 10시	일반	일반주차 차량 비율
		장애	장애인주차 차량 비율
	오후 15시	일반	일반주차 차량 비율
		장애	장애인주차 차량 비율
	오후 19시	일반	일반주차 차량 비율
		장애	장애인주차 차량 비율

주 1) : ①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② 공동주택(다세대, 빌라, 연립, 아파트), ③ 일반건축물(주택 이외 시설물)

■ 건축물 부설주차장(일반조사대상) 응답표(작성예)

연번	① 소재지		② 건물명	③ 지원 여부	③-1 지원 유형	④ 주차면수				⑤ 주차 형태	⑥ 시설물 용도	⑦ 주차장 개방 대상	⑧ 부제 시행 여부	⑨ 운영시간			⑩ 요금 부과 대상	⑪ 주차 요금	⑫ 주차차량 이용률											
	구주소	신주소				법정	장애	지원	가용 면수					총세 대수	주	부			평일	토요	공휴	오전10시	오후15시	오후19시	일반	장애	일반	장애	일반	장애
1	서초구 방배동 425-1	서초구 바나나타운 2.9	세양아파트 비례	1	-	100	2	-	150	-	1	3		1	10~2	2	10~1	6	연립	2	초조시12분 무류, 10분72 500원	80%	50%	110%	50%	90%	50%			

라) 건축물 부설주차장(특별조사대상)

■ 건축물 부설주차장(특별조사대상) 조사표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사 협조문(안)

안녕하십니까?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차하기가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일정한 지역별로 주차시설의 공급상태와 주차수요를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주차난 해소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결과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이므로 조사결과가 주민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표는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주차문제 해소에 함께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조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귀 사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 .

서울특별시장 ○ ○ ○ 구청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설문조사

본 건물에 부설되어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건물주 여러분께 다음 설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문 1. 본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입주자 및 방문객 이외에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계십니까?

① 개방한다 [☞ 조사의 ①항목으로] ② 개방하지 않는다 [☞ 문2로]

문 2. 개방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

문 3. ‘불법주차의 합법주차 유도’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주차장 개방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만, 어떤 혜택이 제공될 경우 주차장을 개방하시겠습니까? 원하시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후 조사의 ①항목으로]

()

응답자 성명		연 락 처	
면 접 원	ID: 성명:	검증원 성명	
구 코드		구역번호	

■ 건축물 부설주차장(특별조사대상) 조사표

- ▶ 아래의 조사항목 중 [보기]에서 적합한 번호를 골라 작성예와 같이 조사표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 조사항목 중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항목		보 기	
① 소재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구/ 동/ 번지 로 기재	새 부여 주소 기재
② 건물명		건물명 기재	
③ 지원주차장 여부		① 일반주차장 ② 지원주차장	
③-1 지원유형(③에 ②의 경우만)		① 내집주차장 ② Green Parking	
④ 주차면수		총 주차면수=법정주차면수+지원주차면수 (법정주차면수=일반인+장애인 주차면수를 구분하여 기재) 가용주차면수	
⑤ 주차시설형태		① 옥내 자주식 ② 옥내 기계식 ③ 옥외 자주식 ④ 옥외 기계식	
⑥ 시설물 용도1)	주 용 도	① 일반주택 ② 공동주택 ③ 일반건축물	
	부속용도	① 일반주택 ② 공동주택 ③ 일반건축물	

조사항목		보 기(※총 주차면수가 10대 이상인 일반건축물만 조사)	
⑦ 주차장 개방 대상		① 입주자개방 ② 방문객개방 ③ 모두개방	
⑧ 부제시행여부		① 미시행 ② 10부제 ③ 5부제 ④ 승용차 요일제 수 10부제+요일제 ⑥ 5부제+요일제 ⑦ 직원만 10부제	
⑨ 운영시간	평 일	□□시:□□분 - □□시:□□분	
	토요일	□□시:□□분 - □□시:□□분	
	공휴일	□□시:□□분 - □□시:□□분	
⑩ 주차요금 부과대상		① 입주자 ② 방문객 ③ 입주자 + 방문객	
⑪ 주차요금		요금 부과대상별 주차요금 기재 (매월/ 시간당)	
⑫ 주차차량 이 용 율	오전 10시	일반	일반주차 차량 비율
		장애	장애인주차 차량 비율
	오후 15시	일반	일반주차 차량 비율
		장애	장애인주차 차량 비율
	오후 19시	일반	일반주차 차량 비율
		장애	장애인주차 차량 비율

주 1) : ①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② 공동주택(다세대, 빌라, 연립, 아파트), ③ 일반건축물(주택 이외 시설물)

2. 주차이용실태조사

- ① “조사시간”을 기재
- ② 현장지도상에 불법주차(X), 적법주차(O) 차량을 구분하여 직접 표기
- ③ 현장지도상에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지도상 표기
- ④ 조사 후 조사구역의 전체 불법주차 총 대수 및 적법주차 총 대수를 지도에 기록
- ⑤ 조사구역 경계의 경우 중앙선이 있는 경우 중앙선 안쪽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중앙선이 없는 경우는 임의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작성

■ 주차이용실태조사 도면 작성 예

